

##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 지수투자신탁[주식-파생재간접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-파생재간접형)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4.01.01 ~ 2014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증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

### 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4. 10.01	법령개정 제32조	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(생략)	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(생략)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を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4. 10.01	신규	정승호	- 2004년 01월 ~ 2007년 12월 SK 텔레콤재무관리실 회계팀 - 2008년 01월 ~ 2014년 01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 - 2014년 02월 ~ 現 삼성자산운용 Passive 솔루션팀	211000 0108
2014. 10.01	말소	김선화	- 2006년 01월 ~ 2007년 03월 삼성물산 - 2007년 04월 ~ 2009년 02월 삼성자산운용 구조화상품팀 - 2009년 03월 ~ 現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2팀	210900 1475
2014. 04.14	신규	이정환	- 1994년 12월~1999년 7월 동원증권	210900 0465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99년 12월~2002년 4월 키움닷컴증권 Analyst</li> <li>- 2002년 5월~2005년 10월 동부투신운용인덱스운용</li> <li>- 2005년 11월 ~ 現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2팀</li> </ul>	
--	--	---	--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회계 감사인명	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회계 감사인명	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
안진회계 법인	1년	550만 원	서면 계약	-	-	-	-	-	-

\*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- 해당사항없음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